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개정 2023. 6. 23.>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처리기간(제10조 및 제19조 관련)

(단위: 일)

구 분	성능인증	변경인증
축광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소화전함(지하소화장치함은 제외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 배관, 탐지부, 지시압력계, 공기안전매트, 소방용밸브, 소방용 스트레이너, 소방용 압력스위치,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30	25
방수구,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 살수헤드)	35	30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소화설비용 헤드(분말헤드, 포 헤드)	40	30
소방용전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소방용흡수관, 소화전함(지하소화장치함의 경우만 해당한다)	50	3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80	175

비 고

1. 별표 7 제22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처리기간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및 보완된 사항에 대한 시험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